

#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서

성북문화재단에 성북 문화예술 발전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접수된 기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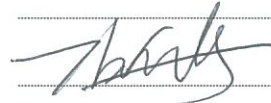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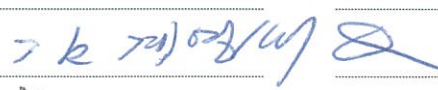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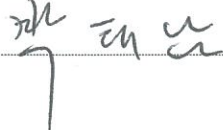
## ■ 심의내역

- 안건 : 성북문화재단에 기부(기탁)된 기부금 접수

### - 의 결 사 항 -

위 안건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접수하기로 심의 의결함

2016. 2. 29.

구 분	성 명	서 명	의 견
위원장	김 영 배		_____
부위원장	김 병 환		_____
위원	박 형 중		_____
위원	손 정 수		_____
위원	전 성	_____	_____
위원	이 재 현	_____	_____
위원	김 성 자		_____
위원	박 중 선	_____	_____
위원	김 상 찬		_____
위원	장 영 철	_____	_____
위원	김 계 영		_____
위원	박 태 남		_____

##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기부내역

### 1. 심 의 자 료

- 기부내역 : 정기후원 등 4건 60,813,300원
- 후원목적 : 성북 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 사업 지원
- 기부(기탁) 사유
  - 성북 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
- 검토사항
  - 관련규정 검토
    -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(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(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) 규정 저촉사항 여부
    - 성북문화재단 설립근거
- 검토결과
  -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(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(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)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
  -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문화재단은 2012.10.29.자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음

## 2. 기부 내역

### □ 기부금 총괄

연번	후원형태	후원자	후원금액(원)	기탁사유	비고
1	정기후원	개인 367명	60,000,000	성북 문화예술 발전	2016년도 예상모금액
2	사업자후원	신한은행	700,000	온가족무비데이 사업 후원	2015년도 미심사 건
3	개인후원	아리랑도서관 도서관행사 참여자	104,500	성북 문화예술 발전	2015년도 미심사 건
4		꿈마루도서관 도서관행사 참여자	8,800	성북 문화예술 발전	
합 계			<b>60,813,300</b>		

### □ 정기후원 기탁자 - 2016년 예상 모금액

후원자	예상 모금액(원)	입금일자	기탁사유
정기후원자 367명	60,000,000	2016. 매월 약정일	성북문화예술발전

### □ 사업자후원 기탁자 - 2015년도 미심사 건

후원자	모금액(원)	입금일자	기탁사유
신한은행	700,000	2015. 11. 05.	온가족무비데이사업 후원

### □ 개인후원 기탁자 - 2015년도 미심사 건

후원자	모금액(원)	입금일자	기탁사유
아리랑도서관 도서관행사 참여자	104,500	2015. 10. 14.	성북 문화예술 발전
꿈마루도서관 도서관행사 참여자	8,800	2015. 11. 12.	성북 문화예술 발전